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4. 16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1. 4. 13. 이필레 의원 외 4명
- 나. 회부일자 : 2021. 4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21. 4. 16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필레 의원

가. 제안이유

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3)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- 5)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- 6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제안되었습니다.
-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
 -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마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과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로 하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예산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,
 - 안 제6조에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,
 -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를,
 -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등 총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법령과 서울시 자치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과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

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※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조례 제정 현황 : 서울시 및 16개구 제정 시행

- 강남, 강동, 강서, 강북, 구로, 금천, 노원, 도봉, 동대문, 동작, 서초, 성북, 양천, 영등포, 은평, 종로

○ 2021.3.31. 현재 마포구의 수급자를 제외한 한부모 가족 수 현황은 총402세대 974명으로 이중 모자 가족이 317세대 769명으로 전체의 78.9%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시설 입소자는 5개 시설에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

{표1} 마포구 한부모가족 현황

(2021.3.31. 사회보장시스템 기준,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
합 계		모 자		부 자		조 손		청소년 한부모 (부모가 만24세 이하)	
세대	세대원	세대	세대원	세대	세대원	세대	세대원	세대	세대원
402	974	317	769	80	196	2	3	3	6

{표2} 마포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현황

(2021.3.31. 기준)

연번	시설구분	시설명	소재지	시설장	운영체	전화번호	종사자수	수용인원		비고
								정원	현원	
			계				20	62	30	
1	미혼모자기본 생활지원형	마포아란원	새창로4나길 5 (도화동)	이숙영	한국장로교 복지재단	711-4725	6	12	6	국·시·비 지원100 %- 운영비 -아이돌봄 -상담치료 등
2	미혼모자공동 생활지원형	애란영스빌	희우정로20길 44-13 (망원동)	표승희	"	333-4725	3	20	12	
3	"	아름뜰	양화로8길 32-3 (서교동)	이현주	홀트 아동복지회	334-4614	3	20	10	
4	"	마포클로버	동교로135-4 (서교동)	김미현	"	322-3325	2	10	2	
5	복지상담소	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KUMSN	성산로2길 41, 301호(성산동)	오향린	한국미혼모 지원네트워크	734-5007	4	이용시설		지원없음

○ 검토의견

본 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마포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

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,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경제적,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